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기후환경본부

총 6건 건의

목 록

| 연 번 | 건의제목 | 건의부서 |
|-----|--|--------|
| 1 | 전기 소방 설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| 녹색에너지과 |
| 2 |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 전기이륜차 포함 건의 (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) | 친환경차량과 |
| 3 |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내 관급공사장 친환경 도료 사용 의무화 | 대기정책과 |
| 4 | 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| 대기정책과 |
| 5 | 조기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 지원제도 신설 | 대기정책과 |
| 6 |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완화 | 자원순환과 |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|--|-------|
| 1. 전기 소방 설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(녹색에너지과, '25.4.23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동주택 정전사고는 전기설비 용량 부족, 시설 노후화,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의 교체 비용 부담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등의 이유로 노후 설비 교체에 소극적임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토교통부 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의 전기·통신설비 노후도 부문 평가항목 중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「전기소방설비 노후도」 등 3개 평가항목 삭제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514호) | 국토교통부 |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|---|----------------|
| <p>2.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 전기이륜차 포함 (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) (친환경차량과, '25.3.28.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이륜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 ※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(자동차의 종류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기이륜차 지원 및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확대 추진이 어려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기이륜차의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지정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 | <p>산업통상자원부</p> |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-|---|--------------|
| <p>3.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내 관급공사장 친환경 도료 사용 의무화 (대기정책과, '25.3.28.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 및 건물 도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(VOCs)이 다량 발생하는 배출원임 (전국기준 103,996톤(11%), 서울 기준 8,857톤(16.2%) 발생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장 도장은 대기 중으로 직접 VOCs가 배출되어 도료 내 함량 저감이 필수이나, 시방서 내 친환경 도료 사용은 권고 수준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내 '관급공사장의 공인된 친환경 도료 사용 의무화' 명시 ※ 관급공사장 내 친환경 도료 사용 의무화 시 전국기준 약 8,500톤의 VOCs 감축 효과 기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| <p>국토교통부</p> |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-|---|------------|
| <p>4. 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(대기정책과, '25.5.2.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보조금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여 환경부 고시에서 조기폐차 지원 제외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만을 폐차 유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(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) 제8조제3호 일부 삭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 | <p>환경부</p> |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|---|------------|
| <p>5. 조기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 지원제도 신설 (대기정책과, '25.5.2.)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·5등급 조기폐차를 적극 추진 중이나, 현재 조기폐차 제도는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할 때만 추가보조금을 지원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기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어 조기폐차 신청자는 최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차량을 다시 구매하게 되므로 운행차 감소 및 대기질 개선에 한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기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와 차량 미구매 약정 체결 시 대중교통 이용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(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)에 근거 규정 신설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 | <p>환경부</p> |

| 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 | 건의내용 | 소관부처 |
|--|---|------------|
| <p>6.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완화 (자원순환과, '25.5.2.)</p> | 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(5년)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업 계속 수행 여부를 허가기관에 신청 및 확인받아야 함 ※ 서울시 폐기물처리업체 총 356개('25.3월 기준) (수집·운반업체 348개, 재활용업체 8개) <p>□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기물 수집·운반업과 폐기물 처분업·재활용업 모두 유효기간(5년) 동일 ※ 수집·운반업은 단순 차량대수와 사무실 유무가 허가요건으로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이 필요한 처분업·재활용업과 차별 적용 필요 ○ 결격사유 대상이 폐기물처리업체 모든 근로자로 과도한 대상을 기준으로 조희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경우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 ○ 결격사유 조희시 사용자(근로자)은 제외하고 대표자/임원으로 대상 축소 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의3 ○ 「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| <p>환경부</p> |